

개정 저작권법, 2007년 6월 말 발효

제2장 저작권의 제7절 출판권으로 예속, 출판권 고유의 상징성 퇴색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한 ‘비친고죄’ 적용

1986년 전면개정에 이어 20여 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00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8일 공포됐다. 개정된 법은 ‘공중송신권 신설, 업무상 저작물 개념의 도입, 실연자에 대한 인격권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 비친고죄 및 과태료 규정의 도입’ 등이다.(표 참조)

올해 6월말에 발효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은 그동안 출판계의 적극적인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에서 ‘제3장 출판권’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 ‘제2장 저작권’의 ‘제7절 출판권’으로 예속됐다. 이에 대해 세명대 김기태 교수(출협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는 “출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디지털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개정이지만, 영상저작권은 별도의 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 중에서 ‘비친고죄’에 대한 내용에 출판

계가 긴장하고 있다. 출협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저작권법에서 기존의 친고죄 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한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써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다 보니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태 교수는 “비친고죄 내용을 두고 출판계 내부 싸움은 있어서는 안된다. 출판사들이 제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개정을 위해 출판인들이 힘을 모으고, 전자책 업계와 경쟁관계가 아닌 적극적인 제휴가 필요하다. 저작권 단체와도 연계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두 측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취재_정윤희 기자

〈표〉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자료제공 출협 저작권상담실)

1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함(제2조 제7호 내지 제12호).
2	공중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 제32호).
3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제도를 도입함(제2조 제33호 및 제56조).
4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신설함(제18조).
5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제24조).
6	학교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수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
7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지급단체 지정 및 취소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
8	신문,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 · 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27조).
9	도서관 등에서의 보상금의 지급단체지정 및 취소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제6항).

- 10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해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제50조 제3항 및 제4항).
- 11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제64조).
- 12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제66조 내지 제68조).
- 13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제70조).
- 14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제71조 및 제80조).
- 15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신설하여 부여함(제72조).
- 16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5조 제1항 및 제82조 제1항).
- 17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제76조 및 제83조).
- 18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제86조).
- 19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제103조).
- 20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04조).
- 21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승인내용을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 2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관리업자가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07조).
- 2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목적을 확대함(제112조).
- 24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제113조).
- 25 저작권 분쟁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제114조).
- 26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
- 27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34조 신설).
- 28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제140조).